

1. 법률

- 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법률*

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6/25 제정·2019/9/16 시행)¹⁾

1) 제정 이유

- 의무적으로 전자등록을 해야 하는 주식·사채 등의 범위, 전자등록업허가 요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 절차 및 법률」의 시행일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주권등 증권권의 권리 증서를 실물로 발행하지 않고 주식·사채 등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 장부에 등록
 - 증권권의 발행·유통·권리 행사 등 주식·사채 등에 관련된 모든 사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전자증권 제도를 도입

2) 주요 내용

- 전자등록업허가 요건 구체화(제3조 및 별표 1)
 - 전자등록업 허가 시 전자등록 대상 주식·사채 등의 범위에 따른 전자등록업 허가업무 단위별로 취급할 수 있는 전자등록 대상 주식·사채 등의 범위와 그에 해당하는 최저자기자본
 - 전자등록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전산설비·통신수단·업무공간 등 물적 설비 확보
 - 전자등록업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는 출자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의 기준을 충족
- 전자등록업허가의 세부절차 마련(제4조 및 제6조)
 - 전자등록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전자등록업허가 신청서등을 제출
 - 사업계획, 대주주에 관한 사항,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등을 적고, 정관·대주주 요건 확인자료 및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
 - 전자등록업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미리 예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예비허가신청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는 허가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동일하게 제출

* 해당 내용은 개정된 법제처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됨

1) 법률 부칙에서 공포 후 4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법률을 시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4096호, 2016.3.22. 공포), 전자증권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법률의 시행일을 2019년 9월 16일로 정함

- 예비허가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가 허가신청을 할 때까지 변경된 부분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허가신청서 기재사항 일부를 적지 않거나 첨부서류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의무 전자등록 대상이 되는 주식·사채 등 추가(제18조)

- 주식·사채 및 투자신탁 수익권 등 법률에서 의무적으로 전자등록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주식·사채 등에 추가하여 전자등록기관을 통한 권리 행사에 적합한 국내에서 발행되는 증권예탁증권, 조건부자본증권 등을 전자등록의 방법으로만 발행하도록 함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 신청 방법 및 절차 구체화(제19조 및 제21조)

- 발행인은 전자등록기관에 제출하는 전자등록신청서나 전자등록 사전심사신청서를 제출
 - 신규 전자등록이나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주식등의 종류·종목 및 종목별 수량 또는 금액, 발행인의 명칭 등을 적고, 발행의 근거가 되는 정관·계약·약관 등을 첨부서류로 제출
- 전자등록기관은 전자등록 신청을 거부 사유
 - 법률에서 정한 거부사유 외에 전자등록기관을 통한 권리 행사가 곤란한 경우
 - 주권의 경우 정관에 따라 양도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하는 발행인이 명의개서 대행회사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

□ 계좌 간 대체의 전자등록 사유 추가 및 신청 방법 구체화(제25조)

- 법에서 정한 주식 등의 양도·상속·합병 등의 사유 외에 계좌 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할 수 있는 사유 추가
 - 공탁된 전자등록 주식·사채 등을 수령하기 위한 경우
 - 법원의 판결·결정 등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려는 경우 등을 추가 규정
- 주식·사채 등의 양도를 위한 전자등록의 경우에는 양도인이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이 전자등록된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계좌 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신청
 - 단, 양도인의 동의를 있으면 양수인이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초과분 발생 시 해결 방법·순서 구체화(제35조)

- 고객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 등의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사채 등의 총수량 또는 총금액이 고객관리계좌부 또는 발행인관리계좌부에 기록된 실제 발행된 총수량 또는 총금액을 초과하여 초과분이 발생하는 경우
 - 초과분이 발생한 계좌관리기관이나 전자등록기관은 초과분에 대한 전자등록을 말소하여 초과분을 해소하도록 함
- 초과분이 발생한 계좌관리기관이나 전자등록기관이 초과분을 해소하지 않는 경우
 - 전자등록기관이 전자등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재원을 사용하여 해소하고, 해당 재원으로 초과분 해소에 부족하면 모든 계좌관리기관이 부담하는 분담금으로 초과분을 해소하도록 함
- 초과분을 해소한 계좌관리기관 및 전자등록기관은 초과분 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전자등록기관이 사용한 자원 중에 구상권을 행사하고도 보전(補填)하지 못한 금액이 있으면 모든 계좌관리기관의 부담으로 자원을 복구

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6/25 개정·2019/7/1 시행)

1) 개정 이유

-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법률 제16293호, 2019.1.15. 공포, 7.1. 시행)됨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금융회사 등의 내부 업무지침 포함 사항(제9조 제2항)

- 금융회사 등의 내부 업무지침에 포함될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회사 등의 내부 통제를 강화하여 금융거래의 건전성을 향상
 - 불법재산 의심 거래의 보고 또는 고객 현금거래 보고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거래에 대한 감시 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우려 시 고객 확인을 위해 고객의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을 평가하는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신규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금융회사 등이 대한민국 외에 소재하는 자회사 또는 지점의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의무의 이행을 감시하고 관리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고객확인 사항의 주기적 점검(제10조의6 제2항)

-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업무의 정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 금융회사 등은 고객확인을 한 후 거래가 유지되는 동안 고객의 거래행위 등을 고려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 자금조달행위의 위험도에 따라 자체적으로 설정한 주기에 따라 고객확인을 하도록 함

□ 금융거래 자료 및 정보의 보존 방법과 장소 등(제10조의8)

- 관계 법령·약관 또는 합의 등에 따른 계약기간의 만료, 해지권·해제권 또는 취소권의 행사, 변제 등으로 인한 채권의 소멸 등 사유로 금융거래가 종료되는 날을 금융거래 자료 및 정보 보존의 기산점인 금융거래관계가 종료한 때 로 정함

- 금융회사 등은 대출·보증·보험 등의 업무에 따른 거래,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 업무에 따른 거래 또는 외국환업무에 따른 거래 등의 금융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5년간 금융거래 자료 및 정보를 보존해야 함
- 금융회사 등은 금융거래 자료 및 정보를 문서, 마이크로필름, 디스크, 자기테이프 또는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방법으로 보존
 - 해당 자료 및 정보는 원칙적으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보존

□ 과태료의 부가기준(별표 2)

- 금융회사 등이 불법재산 의심 거래의 보고 또는 고액 현금거래 보고를 원활하게 하고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 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6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 의심거래보고, 고액현금보고, 고객확인 등의 의무 수행과 관련된 금융거래 자료 및 정보를 금융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5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1천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